

창업지원휴직제도 변경사항

수정 : 2012.10.17

분류	구	신	비고
휴직기간	○ 최소 1년6개월 ~ 최대 3년6개월 - 의무휴직기간: 1년6개월 - 본인 희망에 의해 최장 2년간 추가 휴직 가능(6개월 단위)	좌동	
보수기준	○ 유급: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만 지급 ○ 무급: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후의 기간	좌동	
대상분야	제한 없음(개인이 희망한 모든 창업분야)	좌동	
지원자격	○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조합원 중 희망자 - 구KTF 조합원은 KTF의 재직기간(경력포함)과 KT재직기간의 합을 적용	○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조합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추가) ✓ 교육과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추가) ※ 구KTF 조합원은 KTF의 재직기간(경력포함)과 KT재직기간의 합을 적용	*추가: 최초 창업지원제도 시행시 공지된 사항 누락
지원내역	○ 창업교육 및 컨설팅 희망시 지원 ○ 희망시 KT사육 유희상면 임대 지원(유상) ○ 사중 은행과 제휴, 명예퇴직금 50%범위 내 창업자금 융자지원(삭제)	○ 창업교육 및 컨설팅 희망시 지원 ○ 희망시 KT사육 유희상면 임대 지원(유상) ✓ 휴직자 창업지원을 위한 원데이 워크샵 실시(필수) (추가)	*삭제: 과거 검토단계 내용으로 최초시행당시 제외된 내용 *추가: 창업휴직자 지원강화
신청절차	○ 창업지원제도 시행 공고 및 희망자 지원 ○ 창업신청 - 해당기관 인사담당부서(단), 사업부서는 부문, 그 외 부서는 본사 인사담당에 신청 - 제출서류: 창업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휴직 희망기간 포함), 아력사항	○ 창업지원제도 시행 공고 및 희망자 지원 ✓ 창업신청 : 희망자가 신청서류 작성 후 시스템 등록 ▪ 등록 : BIT ERP - HR - 개인업무 - 인사정보 - 휴직/퇴직신청 - 창업지원휴직신청(변경) ▪ 제출서류 : 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프로세스 세분화 및 강화
심의 및 선정	○ 창업심의: 창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예심의, 본심의) 선정 - 예심의(1차): 소속 기관/부서장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1차 심의 통과자에 대하여 온라인상에 창업신청 등록(가관 담당) - 본심의(2차):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주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의기준 - 예심의(1차):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가 정신 등을 평가하여 1~4등급 부여(2등급 이상자에 한하여 본심의 상정) - 본심의(2차): 본심의 상정자를 대상으로 적합/부적합 판정, 심의결과 합의 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적합자로 선정	○ 창업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예심의, 본심의) - 예심의(1차) : 소속기관 부서장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본심의(2차) :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주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의기준 - 예심의(1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가정신 등을 평가하여 1~4등급 부여 (2등급 이상자에 한하여 통과처리, 본심의 상정) - 본심의(2차) : 본심의 상정자를 대상으로 적합/부적합 심의하여 합의 또는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확정 처리 ✓ 단, 창업분야가 kt관련(그룹사 포함)일 경우,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본심의시 적합/부적합 최종결정(추가)	*추가: kt관련 창업분야에 대한 심의 강화

협약체결 증빙서류	○ 창업선정자 협약서 체결 - 창업자로 선정된 후 2주 이내 - 체결내용: 휴직기간, 의무와 책임 한계, 인사처리 등 ○ 창업선정자 증빙서류 제출 - 휴직발령 후 1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반기 익월(휴직기간) 진행상태 통보(안재경영실 인사담당)	○ 협약서 체결 - 창업자로 선정된 후 2주 이내 - 체결내용: 휴직기간, 의무와 책임 한계, 인사처리 등 ○ 증빙서류 제출(의무사항) - 휴직발령 후 1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휴직발령 후 1년 이후: 반기 익월(휴직기간) 진행상태 통보(소속기관 인사담당)	
운영	○ 의무 휴직기간(최초 1년6개월) 중에는 복직 불가 ○ 추가 휴직기간중 복귀 희망시에는 복귀희망일 1개월 전 복귀희망서 제출 ○ 1년6개월 이내의 추가 휴직기간을 신청한 직원이 추가연장(6개월단위)을 희망할 경우 휴직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본사 통보 ○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 복귀 시 원소속 복귀 원칙 - 본인 희망시에는 텔런드-마켓에 등록하여 이동가능 ○ 휴직기간 중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경고 또는 협약서 해지시 즉시 복귀 예)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경쟁사를 이롭게 하는 업종 또는 활동, 회사상표, 상호, 로고 폰트 직책, 직위 등을 임의로 기재, 표현하는 활동 등(세부 의무사항은 차후 확정) ○ 휴직기간의 인사평가 등은 리프레시 휴직과 동일 - 단, 휴직기간 중에는 승격 없음 ○ 휴직기간 중 의원면직, 명예퇴직 가능(단, 전직지원휴직 미부여) - 평균임금산정은 휴직 전 정상 근무시의 지급 금액 기준	○ 의무 휴직기간(최초 1년6개월) 중에는 복직 불가 ○ 추가 휴직기간중 복귀 희망시에는 복귀희망일 1개월 전 복귀희망서 제출 ○ 1년6개월 이내의 추가 휴직기간을 신청한 직원이 추가연장(6개월단위)을 희망할 경우 휴직만료일 1개월 전까지 소속기관 인사담당 통보 ○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 복귀 시 원소속 복귀 원칙 - 단, 본인 희망시 TM을 통한 이동가능 ○ √ 휴직기간 중 의무사항 불이행시 수준별 인사조치(수정) ○ 휴직기간의 인사평가 등은 리프레시 휴직과 동일 - 단, 휴직기간 중에는 승격 없음 ○ 휴직기간 중 의원면직, 명예퇴직 가능(단, 전직지원휴직 미부여) - 평균임금산정은 휴직 전 정상 근무시의 지급 금액 기준 ○ √ 유급 휴직기간은 재직자와 동일한 복지 지원(추가)	*수정: 창업협약서 개정 *추가: 기존사항으로, 누락된 내용 보완
시행시기	매년 4월 1일, 10월 1일(2회시행)	매년 4월, 10월 중(2회시행)	